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시행일 : 2017.11.13	시행일 : 2018.10.08	시행일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이용자 번호 :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 혹은 숫자 3. 이용자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나 숫자 5. 이체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이체 출금시 이체처리 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설정하는 문자 혹은 숫자. 12.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 종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 혹은 숫자(무ID서비스 신청 고객 의 경우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비밀번호(ID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나 숫자 (무ID서비스 신청 고객의 경우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이체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설정하는 문자 혹은 숫자 12.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 종략 - 18. 스크래핑 :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수정 (2,3,5,12) 신규추가 (18항)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13. 기타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준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정보 및 투자상품조회 2. 기타 준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u>13. 스크래핑</u> 14. 기타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준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정보 및 투자상품조회 <u>2. 스크래핑</u> <u>3. 기타 준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u>	항목추가 및 항목추가에 따른 번호 변경 13. 스크래핑 14. 기타 ~ 항목추가 및 항목추가에 따른 번호변경 2. 스크래핑 3. 기타 ~
제4조(본인확인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번호와 이용자 비밀번호	제4조(본인확인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번호(ID)와 이용자 비밀번호(ID비밀번호)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수정
제13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지)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통보조치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중략 - 8. 이용자가 등록한 간편 인증이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 기기 정보 또는 생체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제13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지)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통보조치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중략 - 8. 이용자가 등록한 간편 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 기기 정보 또는 생체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간편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제16조(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PIN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1588-6800) 또는 영업점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번호(ID), 이용자비밀번호(ID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PIN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1588-6800) 또는 영업점에 통보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수정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09년 4월 3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3년 9월 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2월 2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5월 13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7년 11월 13일에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09년 4월 3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3년 9월 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2월 2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5월 13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에 시행한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7년 11월 13일에 시행한다. <u>(시행일)이 약관은 2018년 10월 8일에 시행한다.</u>	시행일 추가
별 첨 1. 제8조2항의 "<별첨>에서 정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별 첨 1. 제9조2항의 "<별첨>에서 정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조항 오타 수정(8조 2항-> 9조 2항)